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621호 2017. 12. 6.(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1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거창푸르지오아파트) 고시문 ..... 3

거창군 고시 제2017-150호 웅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 4

거창군 고시 제2017-151호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 33

거창군 고시 제2017-152호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5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1268호 2018년 곰내미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공고 ..... 40

거창군 공고 제2017-1273호 거창군 향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4

거창군 공고 제2017-1274호 2018년 주차단속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공모 ..... 62

거창군 공고 제2017-1277호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노인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64

거창군 공고 제2017-1278호 2018년 거창군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 73

거창군 공고 제2017-1279호 2018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 76  
거창군 공고 제2017-128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79  
거창군 공고 제2017-1286호 분묘개장 공고(2차) ..... 80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29호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 81

의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고 시 문

거창군 고시 제 2017-149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 이창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거창군수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송정지구 거창푸르지오 아파트)
  2. 사업주체
    - 가. 상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나. 대표자: 이창희
    - 다.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대치동, 신안빌딩 12층(변경)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 가. 위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송정도시개발사업지구 6B-1L, 6B-2L
    - 나. 대지면적: 당초 32,070.58㎡ ⇒ 변경 32,099.20㎡(지적확정측량에 의거)
    - 다. 연면적: 94,787.789㎡
    - 라. 규모: 아파트 9동(677세대), 보육시설/경로당 1동, 상가 1동, 경비실 2동
    - 마. 형별: 62A형(전용면적 62.9966㎡), 62B형(전용면적 62.9877㎡)  
74형(전용면적 74.9706㎡), 84A형(전용면적 84.8486㎡)  
84B형(전용면적 84.9607㎡)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5년 11월 ~ 2018년 5월  
                  변경 2015년 11월 ~ 2018년 1월
- ※ 의제처리사항: 거설건축물 준치기간  
(당초: 2018.1.31, 변경: 2018.1.12) 끝.

## 웅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1-03(2011. 1. 17.)호, 거창군 고시 제2011-21(2011. 3. 28.)호, 거창군 고시 제2012-80(2012.7.13), 거창군 고시 제2013-98(2013.8.26)호, 거창군 고시 제2014-87(2014.7.28)호 거창군 고시 제2015-164(2015.12.17)호로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웅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행정조치 미 이행 등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6.

### 거창군수

1. 산업단지의 명칭 : 웅양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주)일성 대표이사 김영성
  - 나.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 나. 면적 : 68,613㎡
4. 감독처분 내용 및 사유
  - 가. 처분내용 : 웅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나. 사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1)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 시행

2) 행정조치 미 이행

5.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폐지)

가. 토지이용계획(폐지)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계		68,613	100.0	
산업시설용지		36,555	53.3	
녹지용지	소공원	2,427	3.5	
	완충녹지	13,058	19.0	
공공시설용지	도로	12,138	17.7	
	배수지	1,038	1.5	
	유수지	1,142	1.7	
	오수처리시설	658	1.0	
	대체구거	480	0.7	
	주차장	1,117	1.6	

나. 기반시설계획(폐지)

1) 도로 계획(폐지)

가) 총괄표(폐지)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계	3	780	12,138	-	-	-	2	704	11,829	1	76	309
중로	2	704	11,829	-	-	-	2	704	11,829	-	-	-
소로	1	76	309	-	-	-	-	-	-	1	76	309

나) 도로 결정조서(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 지	최 초 결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40	18	집산 도로	102	중로 2-33	죽림리 산136	일반 도로	산업 용지	-	-
신설	중로	2	41	15	집산 도로	602	죽림리 산137-1	죽림리 산137-1	일반 도로	산업 용지		
신설	소로	3	230	4	국지 도로	76	죽림리 산137-1	죽림리 산137-1	일반 도로	중2-4 1~배 수시설		

2) 주차장 계획(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379	379	379		
신설	-	주차장	웅양면 죽림리 산137-1	379	738	738		

3) 녹지시설 계획(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11	녹지	완충녹지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13,05 8	13,058	13,058		

4) 공원 계획(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19	공원	소공원	웅양면 죽림리 산136	1,002	1,002	1,002		
신 설	20	공원	소공원	웅양면 죽림리 산136	1,425	1,425	1,425		

5) 방재시설 계획(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1,142	1,142	1,142	-	

6) 상수도시설 계획(폐지)

○ 용수량

구분	용수량(m <sup>3</sup> /일)	비고
계	21.5	계획용수량 : 21.5m <sup>3</sup> /일 생활용수는 2012년 완공되는 웅양지방상수도에 상수도급수 신청을 하여 사용할 계획
생활용수	21.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죽림배수시설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1,038	1,038	1,038		

7) 환경기초시설 계획(폐지)

○ 하수도 설치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3	하수도	죽림 하수처리장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658	658	658	-	

○ 하수량

구분	하수량(m <sup>3</sup> /일)	비고
계	19.32	계획하수량 : 19.32m <sup>3</sup> /일 죽림 하수처리장 설치
생활하수	19.32	

## 6. 재원조달계획(폐지)

가. 자금조달 : 사업시행자, 거창군(폐지)

나. 자금조달계획(폐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투자	구성비(%)	비고
합 계		5,146	100.0	
시행자	계	5,007	97.3	
	자부담	2,940	57.1	
	토석제공에 따른 이윤	2,067	40.2	
보조금(군비)		139	2.7	오수처리시설

다. 연차별 투자계획(폐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계	5,146	-	-	-	-	678	700	1,668	2,100
시행자 부담	5,007	-	-	-	-	678	700	1,668	1,961
보조금 (군비)	139	-	-	-	-	-	-	-	139

라. 자금 세부 투입 계획(폐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합계		5,146	678	700	1,668	2,100
수입	계	2,700	-	1,080	1,080	540
	골재판매대	2,700	-	1,080	1,080	540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지 출	계	7,846	678	1,780	2,748	2,640
	골재생산비	4,140	-	1,656	1,656	828
	토지매입비	584	584	-	-	-
	인 건 비	1,638	94	112	344	1,088
	자재및장비	1,448	-	-	736	712
	기타 경비	84	-	12	12	60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1”(폐지)

8. 유치업종 배치계획(폐지)

구분	코드	업종	위치	면적(m <sup>2</sup> )	구성비(%)
웅양 일반산업단지	합계			36,555	100.0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I-1	10,611	29.0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I-2	14,611	40.5
	C28	전기장비 제조업	I-3	5,632	15.4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I-4	5,501	15.1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폐지)

가. 주요시설 지원계획(폐지)

▶ 하수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나. 주요시설 설치계획(폐지)

- ▶ 용수공급설비 : 생활용수21.5m<sup>3</sup>/일, 공업용수0톤/일,  
관로(75mm, 50mm, 35mm, L=1,461m)
- ▶ 하수처리시설 : 처리시설19.32m<sup>3</sup>/일, 관로(300mm, L=353m)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폐지)

가. 토지(폐지)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계	68,613	100.0	
산업시설용지	36,555	53.3	사업자귀속
공공시설용지	16,573	24.2	
도로	12,138	17.7	거창군귀속
배수지	1,038	1.5	거창군귀속
유수지	1,142	1.7	거창군귀속
오수처리시설	658	1.0	거창군귀속
대체구거	480	0.7	국(농림수산식품부) 귀속
주차장	1,117	1.6	거창군귀속
녹지용지	15,485	22.5	
소공원	2,427	3.5	거창군귀속
완충녹지	13,058	19.0	거창군귀속

나. 시설물(폐지)

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	중로 2-1	B=18.0m	102.0m	거창군에 귀속
	중로 2-2	B=15.0m	602.0m	거창군에 귀속

구	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소로 3-1	B=4.0m	76.0m	거창군에 귀속	
구조물	L형옹벽	H=3.0m~7.5m	264.6m	거창군에 귀속	
	전석쌓기	H=0.6~3.0m	2,275.4m	거창군에 귀속	
우수	L형측구	TY-1	1,614.0m	거창군에 귀속	
		TY-2	345.6m	거창군에 귀속	
	RL형측구		99.0m	거창군에 귀속	
	파형강관	D250mm	223.4m	거창군에 귀속	
		D450mm	443.0m	거창군에 귀속	
		D500mm	87.0m	거창군에 귀속	
		D600mm	115.0m	거창군에 귀속	
		D700mm	64.0m	거창군에 귀속	
		D800mm	65.0m	거창군에 귀속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D1,000mm	187.0m	거창군에 귀속	
		400C	1,546.0m	거창군에 귀속	
		1000C	98.0m	거창군에 귀속	
	횡단측구	400C	46.3m	거창군에 귀속	
	집수정	우수받이, 600×600×1000 1000×1000×1500	42EA	거창군에 귀속	
		우수맨홀	47EA	거창군에 귀속	
산마루측구	조립식	255.0m	거창군에 귀속		
유수지		1개소	거창군에 귀속		
오수	오수맨홀	오수받이, 오수맨홀	24EA	거창군에 귀속	
	오수관	D250mm, D300mm	494.0m	거창군에 귀속	
	오수처리장		1개소	거창군에 귀속	
상수	상수관로	D50mm, D75mm, D300mm	1,460.0m	거창군에 귀속	

구	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소화전	지상식	3EA	거창군에 귀속	
포장	아스콘포장	T=50cm	9,184.0m <sup>2</sup>	거창군에 귀속	
조경	차폐수목	산벚나무 외10종	19,462주	거창군에 귀속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주의표시	19.0EA	거창군에 귀속	
	차선도색	백색 546.4m <sup>2</sup> , 황색 329.1m <sup>2</sup>	875.5m	거창군에 귀속	
전기	가로등	팔각테파 H=10.0	19EA	거창군에 귀속	
대체구거	철근콘크리트수로관	1000C	142	국(농림수산식품부)에 귀속	

11.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의 사항 : 해당없음

## 12.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폐지)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환원)

#### 1) 거창군 총괄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주거지역	소 계	4,874,062	—	4,874,062	0.6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4,955	—	1,464,955	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3,211,543	—	3,211,543	0.4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7,430	—	137,430	0.02	
	준주거지역	60,134	—	60,134	0.01	
상업지역	소 계	347,740	—	347,740	0.04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0.04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1,340,631	감)68,613	1,272,018	0.16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312,188	감)68,613	1,243,575	0.15	
	준공업지역	28,443	—	28,443	0.01	
녹지지역	소 계	25,410,348	—	25,410,348	3.16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생산녹지지역	7,713,291	—	7,713,291	0.96	
	자연녹지지역	16,042,297	—	16,042,297	1.99	
관리지역	소 계	246,507,735	증)66,770	246,574,505	30.66	
	관리지역	8,710,815	—	8,710,815	1.08	
	보전관리지역	155,603,005	증)63,700	155,666,705	19.36	
	생산관리지역	3,896,987	—	3,896,987	0.48	
	계획관리지역	78,296,928	증)3,070	78,299,998	9.74	
농림지역	484,715,266	증)1,843	484,717,109	60.28		
자연환경보전지역	40,949,100	—	40,949,100	5.09		
미지정	—	—	—	—		

※ 기정면적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0-555호(2010년 10월 14일) 참조

2) 용도지역 결정조서(환원)

구역명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8,613	68,613	68,613	100.0	
공업지역	소계	68,613	감68,613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68,613	감68,613	-		
	준공업지역	-	-	-	-	
관리지역	소계	-	증66,770	66,770	100.0	
	보전관리지역	-	증63,700	63,700	92.8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	증3,070	3,070	4.5	
농림지역		-	증1,843	1,843	2.7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폐지)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폐지)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2	용양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거창군 용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68,613	68,613	68,613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폐지)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계		68,613	100.0	
산업시설용지		36,555	53.3	
녹지용지	소공원	2,427	3.5	
	완충녹지	13,058	19.0	
공공시설지	도로	12,138	17.7	
	배수지	1,038	1.5	
	유수지	1,142	1.7	
	오수처리시설	658	1.0	

	대 체 구 거	480	0.7	
	주 차 장	1,117	1.6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폐지) 조서

가) 도로(폐지)

■ 도로 총괄표(폐지)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계	3	780	12,138	-	-	-	2	704	11,829	1	76	309
중로	2	704	11,829	-	-	-	2	704	11,829	-	-	-
소로	1	76	309	-	-	-	-	-	-	1	76	309

■ 도로 결정 조서(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40	18	집산 도로	102	중2-33	죽림리 산136	일반 도로	산업 용지	-	
신설	중로	2	41	15	집산 도로	602	죽림리 산137-1	죽림리 산137-1	일반 도로	산업 용지	-	
신설	소로	3	230	4	국지 도로	76	죽림리 산137-1	죽림리 산137-1	일반 도로	중 2-41~ 배수시설		

■ 도로 결정 사유서(폐지)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로 2류 40호선	노선신설 B=18, L=102m	기존 중로 2-33호선과 웅양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	중로 2류 41호선	노선신설 B=15m, L=602m	웅양일반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및 기반시설용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	소로 3류 230호선	노선신설 B=4m, L=76m	단지내 배수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차장(폐지)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379	379	379		
신설	-	주차장	웅양면 죽림리 산137-1	379	738	738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	주차장	주차장 신설 A = 379m <sup>2</sup>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내 이용자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신설
-	주차장	주차장 신설 A = 738m <sup>2</sup>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내 회차 공간 확보 및 이용자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신설

다) 녹지(폐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초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	녹지	완충녹지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13,058	13,058	13,058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1	녹지	완충녹지 A = 13,058m <sup>2</sup>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기존 농지 및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차폐기능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자 함

라) 공원(폐지)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 <sup>2</sup> )			최초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	공원	소공원	웅양면 죽림리 산136	1,002	1,002	1,002		
신설	20	공원	소공원	웅양면 죽림리 산136	1,425	1,425	1,425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9	소공원	신설 : 1,002m <sup>2</sup>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내 이용자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
20	소공원	신설 : 1,425m <sup>2</sup>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내 이용자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

마) 도시관리계획(소공원⑩조성계획) 결정(폐지)조서

1. 부지총괄표(폐지)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002	1,002	1,002	
신설	도로	웅양면 죽림리 산136	108	108	108	보행자 전용도로 B=1.5m, L=60m
신설	녹지	웅양면 죽림리 산136	894	894	894	녹지

2. 시설총괄표(폐지)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002	-	-	
신 설	도 로	108	-	-	보행자전용도로
신 설	녹 지	894	-	-	녹지

3. 일반시설별 조서(폐지)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면적(m <sup>2</sup> )	위 치	시설규모(m <sup>2</sup> )			비 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1,002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도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108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녹지	1-2	녹 지	894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바) 도시관리계획(소공원⑳조성계획) 결정(폐지)조서

1. 부지총괄표(폐지)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	1,425	1,425	1,425	
신설	운 동 시 설	웅양면 죽림리 산136	54	54	54	
신설	녹 지	웅양면 죽림리 산136	1,371	1,371	1,371	녹지

## 2. 시설총괄표(폐지)

구분	시설명	면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425	-	-	
신설	운동시설	54	-	-	
신설	녹지	1,371	-	-	녹지

## 3. 일반시설별 조서(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sup>2</sup> )	위치	시설규모(m <sup>2</sup> )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합계			1,425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운동 시설	2-1	운동시설	54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녹지	2-2	녹지	1,371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 사) 방재시설(폐지)

#### ■ 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우수지	저류 시설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1,142	1,142	1,142	-	

### 아) 수도공급설비(폐지)

####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죽림 배수시설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1,038	1,038	1,038		

자) 환경기초시설(폐지)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m <sup>2</sup> )			최초 결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3	하수도	죽림 하수처리 장	옹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658	658	658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폐지)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sup>2</sup>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m <sup>2</sup> )	
-	I	68,613	1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10,611	산업 시설 용지
			2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일원	14,811	
			3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일원	5,632	
			4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일원	5,501	
			5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일원	13,058	녹지
			6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1,002	소공원
			7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1,425	
			8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658	하수 처리장
			9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1,038	배수 시설
			10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1,142	유수지
			11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379	주차장
			12	웅양면 죽림리 산137-1번지 일원	738	
			13	웅양면 죽림리 405번지 일원	480	대체 구거
			14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11,831	도로
			15	웅양면 죽림리 산137-1번지 일원	307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폐지)  
가) 산업시설 용지(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 - 1 I - 2 I - 3 I - 4	용도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I-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I-2), 전기장비 제조업(I-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I-4)</li> <li>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대시설</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수배출시설 및 특정수질,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별표 4에 따른 배수배출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 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li> </ul>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 (70%이하)</li> </ul>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 (250%이하)</li> </ul>	

나) 주차장 (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 - 11 I - 12	용도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 (70%이하)</li> </ul>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 (250%이하)</li> </ul>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1	I-1	산업시설용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41호선
2	I-2	산업시설용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41호선
3	I-3	산업시설용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41호선
4	I-4	산업시설용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41호선
5	I-5	완중녹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33호선

※ 조경용지(5m)내 스트로브 잣나무 식재를 권장함.

라) 편입토지조서

번호	소재지(경상남도)				토 지 내 역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	주소	성명	구분	주소		성명
	합 계					108,080	68,613							
1	거창	웅양	죽림	405	전	1,338	896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산136	(주) 일성	근저당권및 지상권설정	사천시 서포면 지구로463	서포농업협 동조합	
											압류	강원도 삼보로 32	국민건강보 험공단	
											가압류	경북 상주시 식산로 96	(주)청호산 업개발	
											압류		거창소방서	
											가압류	경남 거창군 가조면 거리5길	이상호	
											가압류	진주시 남강로503 번길7, 806호	김남옥	
											가압류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 험(주)	
											근저당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김형선	
											근저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 로113번길9	(주)아름마 스	

번호	소재지(경상남도)				토 지 내 역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	주소	성명	구분	주소		성명	
2	거창	웅양	죽림	402-4	구	172	11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	거창	웅양	죽림	406-1	전	712	644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산136	(주)일성	근저당권및 지상권설정	사천시 서포면 지구로463	서포농업협 동조합		
											가압류	경북 상주시 식산로 96	(주)청호산 업개발		
											가압류	진주시 남강로503번길7, 806호	김남옥		
											가압류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 협(주)		
											근저당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김형선		
											근저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113번길9	(주)아름마 스		
4	거창	웅양	죽림	408	전	995	995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	(주)일성	근저당권및 지상권설정	사천시 서포면 지구로463	서포농업협 동조합		
											가압류	경북 상주시 식산로 96	(주)청호산 업개발		
											압류		거창소방서		
											가압류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5길	이상호		
											가압류	진주시 남강로503번길7, 806호	김남옥		
											가압류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 협(주)		
											근저당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김형선		
											근저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113번길9	(주)아름마 스		
5	거창	웅양	죽림	1175	구	1,263	423			국(농림수산식품부)					
6	거창	웅양	죽림	산136	임	61,300	46,736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	(주)일성	근저당권및 지상권설정	사천시 서포면 지구로463	서포농업협 동조합		
											가압류	경북 상주시 식산로 96	(주)청호산 업개발		
											압류		창원지방검 찰청거창지 청		
											압류		거창소방서		
											가압류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씨동	(주)씨에스 개발산업		

번호	소재지(경상남도)				토 지 내 역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	주소	성명	구분	주소	성명		
												가압류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5길	이상호	
												가압류	진주시 남강로503 번길7, 806호	김남옥	
												가압류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 협(주)	
												근저당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김형선	
												근저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 로113번길9	(주)아름마 스	
7	거창	웅양	죽림	산 137 -1	임	42,300	18,807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	(주) 일성	근저당권및 지상권설정	사천시 서포면 지구로463	서포농업협 동조합		
											가압류	경북 상주시 식산로 96	(주)청호산 업개발		
											압류		거창소방서		
											가압류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5길	이상호		
											가압류	진주시 남강로503 번길7, 806호	김남옥		
											가압류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 협(주)		
											근저당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김형선		
												근저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 로113번길9	(주)아름마 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폐지)

---

제1장 총칙

제2장 민간부분 운용지침

제3장 공공부분 운용지침

제4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 웅양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폐지)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되는 “웅양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결정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관련법규, 조례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
- ② 본 지침의 내용은 지정용도와 불허용도로 나누어진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 ③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지침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대상구역)

구역의 범위는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의 “웅양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② “지정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건축해야 하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 ③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해당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 ④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 ⑤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 ⑥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 제5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 ① 본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법령, 조례 및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지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 ② 본 지침의 내용중 누락부분이 있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의 해석 및 유사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의 관례를 따른다.

## 제2장 민간부분 운용지침

### 제1절. 부지에 관한사항

#### 제6조 (사업단위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① 단일 필지를 하나의 가구 또는 획지로 구분하여 공장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일단의 공장용지
- ② 단계별 또는 둘 이상의 사업승인 단위로 건설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공장과 부대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건설계획 등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할 경우의 일단의 부지
- ③ 일단의 공장용지 또는 부대시설 부지를 별도로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지여건 및 부지 규모에 따라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해 분할·합병할 수 있다.

### 제2절. 사업단위에 관한 사항

#### 제7조 (사업단위에 관한 사항)

- 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지에 건설하는 사업단위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6조 제2항의 부지에 건설하는 사업단위로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6조 제2항의 단계별 또는 둘 이상이 사업승인단위로 건설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건설계획을 초과하여 건설할 수 있다.

### 제3절. 용도에 관한 사항

#### 제8조 (용도제한)

- ①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필지는 지정된 용도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
- ② 용도가 지정된 필지의 지정용도는 다음과 같다.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I-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I-2), 전기장비 제조업(I-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I-4)

B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대시설

C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계획조례」상 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D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③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지정용도는 그림의 상단에, 불허용도는 하단에 명기한다.

A
B

예) 건축물용도 : A-지정용도, B-불허용도

④ 용도제한 분류표

지정용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I-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I-2), 전기장비 제조업(I-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I-4)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대시설
불허용도	①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②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수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 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4절. 밀도에 관한 사항

**제9조 (용적률의 적용)**

- ① 공업시설 용적률의 기준은 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그림의 좌측상단에 명기한다.

250%	

예) 용적률 250% 이하

**제10조 (건폐율의 적용)**

- ① 공업시설 건폐율의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이하로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그림의 좌측하단에 명기한다.



예) 건폐율 70% 이하

제5절.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제11조 (공장등의 배치)**

공장 등의 배치는 업종별로 구분 배치토록 권장한다.

제6절.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제12조 (건축물의 형태)**

- ①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쪽의 길이를 그 건축물의 길이로 한다.
- ② 건축물 1동의 길이는 다음의 1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1. 경사도 10° 이상 산지 : 100m 이내
  - 2. 그 밖의 지역 : 150m 이내
- ③ 경사도 10°이상 산지에 2개 이상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길이가 긴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건축물 길이의 1/5이상을 이격하도록 한다.

제7절.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3조 (대지내 조경)**

- ① 대지내 개별 시설주변에는 조경식재, 환경장식물과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② 대지내 통로에는 장식포장을 권장하며 아스콘, 고압벽돌, 전돌 등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선택하여 통행의 안전 및 쾌적성을 제고할 것을 권장한다.

제8절. 동선에 관한 사항

**제14조 (차량 진출입구)**

-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도면상에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며 진입도로로부터 연결되는 차량 진입 구간은 가능한 평행하도록 한다
- ② 단지내의 주요차량동선은 보행동선과 원칙적으로 분리시키되 부득이한 경우 단차를 두거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완화)**

- ① 민간사업자가 본 지침의 기준의 완화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 절차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3장 공공부분 운용지침

제1절. 도로에 관한 사항

#### 제16조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

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지구내부의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지점에 도로교통법령 관련 시행규칙에 제시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7조 (과속방지시설)

① 지구 내부 차량통행속도의 제한이 요구되는 구간에 과속방지턱 등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과속방지시설의 설치시 차량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D=15m내외) 내에는 진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 제4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제18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 ①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 ②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 ③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 16.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서

번호	X 좌표	Y 좌표
1	254449.0810	101914.0690
2	254453.7800	101912.9020
3	254460.0020	101908.2940
4	254466.4270	101900.2240
5	254466.3530	101891.7150
6	254466.2790	101883.2060
7	254470.5020	101871.2670
8	254475.3170	101866.1940
9	254487.2590	101864.0790
10	254491.6440	101862.5470
11	254498.5090	101863.4390
12	254512.4680	101866.3250
13	254517.7160	101864.1260
14	254521.4960	101862.1430
15	254524.4710	101859.8940
16	254538.4960	101850.1270
17	254544.9580	101841.5450
18	254549.4790	101827.4430
19	254552.1820	101811.7280
20	254552.8480	101802.6140
21	254552.4750	101797.2490
22	254558.1580	101764.8170
23	254557.2430	101742.8410
24	254556.4987	101725.7065
25	254549.9160	101725.3090
26	254544.3820	101724.9730
27	254542.9045	101714.2120
28	254541.3110	101698.8890
29	254544.4210	101686.1150
30	254545.8410	101671.1640
31	254544.4290	101658.8500
32	254547.6030	101649.7550
33	254548.0084	101644.6680
34	254543.0578	101644.2735
35	254479.0439	101636.7272
36	254350.1781	101647.5682
37	254300.0893	101660.6017
38	254245.0825	101769.1588
39	254271.0513	101890.4924
40	254307.1620	101887.9340
41	254312.1840	101891.1860
42	254331.9900	101892.3800
43	254389.6020	101897.2760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06.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0길 47 외 5건(부여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787-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536-33	20091228	2017-12-06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7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58-36	20090401	2017-12-06	취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35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사마1길 34-16	20090401	2017-12-06	정제안을 비롯하여 사마시에 합격한 8명의 생원,진사가 나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용전1길 117-33	20090401	2017-12-06	마을앞 해덕들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09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길 24-15	20160420	2017-12-06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33-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0길 47	20160420	2017-12-06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 1.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17-482호(2017. 11. 30.)로 결정된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2.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07일

거창군수

가.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붙임

나.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다. 열람장소: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붙임]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54	20	주간선 도로	1,190	중1-16	중1-1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279	8	국지 도로	3,150	중로3-17	신원구사 산12-7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250	6	국지 도로	580	소1-29	대1-1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251	7	국지 도로	250	중3-27	마리고학 1239-5	일반 도로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1-54	·도로 신설 -폭원:20m 연장:1,190m	·주변 가로망과의 연결체계를 유지하여 도시의 외곽순환도로 기능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도24호선 창동로와 합수교를 연결하는 노선 신설
-	소로2-279	·도로 신설 -폭원:8m 연장:3,150m	·신원면 일원에 조성예정인 풍력단지로의 진출입로 신설
-	소로3-250	·도로 신설 -폭원:6m 연장:580m	·절부마을과 운정마을을 연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
-	소로3-251	·도로 신설 -폭원:7m 연장:250m	·마리 병향마을 진입 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를 위하여 신설

(2) 주차장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0	주차장	·주차장 신설 -위치:거창읍 상림리 670일원 면적:1,760㎡	·거열산성 군립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 및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신설

■ 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20	주차장	거창읍 상림리 670일원	-	증)1,760	1,760		자연녹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30	우혜 공원	어린이 공 원	가북면 우혜리 1699-5일원	-	증)4,820	4,820	-	우혜지구 계획관리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0	어린이 공원	·공원 신설 -위치:가북면 우혜리 1699-5일원 면적:4,820m <sup>2</sup>	·우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으로서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운동, 휴식 등을 위해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을 조성함에 따라 기초성된 지역을 군계획 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여 효율적인 관 리를 도모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과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원면 과정리 199-4 일원	82,480	증)30,730	113,210	거고41호 ('96.9.20)	주거형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과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별 : 주거 ·위치 : 신원면 과정리 199-4 일원 ·면적 : 82,480m <sup>2</sup> → 113,210m <sup>2</sup> (증30,730m <sup>2</sup>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2년 신원면 소재지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민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역을 확장 변경코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과정지구단위계획

(가)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2	과정지구	주거	신원면 과정리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82,480	거고41호 (96. 9.20)	
변경	12	과정지구	주거	신원면 과정리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113,210	-	

(나) 용도구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2,480	증)30,730	113,210	100.0	
주거용지	68,879	증)6,835	75,714	66.9	
상업용지	6,800	-	6,800	6.0	
녹지용지	6,801	증)23,895	30,696	27.1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2	15	주간선 도로	736	중2-54	중2-65	일반 도로	-	거고41호 (’96.9.20)	
기정	소로	3	214	6	국 지 도 로	90	중3-215	소3-216	일반 도로	-	거고41호 (’96.9.20)	

2. 2) 공공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8	마을오수처리장	과정리 948-2 일원	-	증)937	937	녹지용지

(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지 정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최고	최저
주 거 용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거창군계획조례 별표3(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60	150	4	-
상 업 용 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6호 및 거창군계획조례 별표6(준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60	150	4	-
녹 지 용 지	·거창군계획조례 별표16(자연녹지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40	100	4	-

거창군 공고 제2017 - 1268호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공고

거창군 웅양면 곰내미농촌휴양마을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마을홍보 사무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1월 30일

거창군수

###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농촌체험휴양 마을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사무장
- 근무지 : 웅양면 곰내미농촌체험휴양마을
- 채용인원 : 1명
- 채용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 담당업무

- 마을체험 프로그램개발 운영활동 지도
- 마을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 회계·고객관리, 마을사무 관리, 주민교육

###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자격요건,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과 경력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정

### 4. 채용자격 기준

- 채용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마을의 운영계획서상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사람
- 거주지제한 : 접수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30.(목) ~ 2017. 12. 15(금) / 15일간
- 접수처
  - 접 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활력귀농담당
  - 접수방법 : 응시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2.15.(금) 18:00까지 접수
    - ① 방문접수 : 농업기술센터 1층 농촌활력귀농담당으로 제출
    - ② 이메일접수: miry35@korea.kr

##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 통보 : 2017. 12. 16(토)/개별 통보
- 면접시험일시, 장소 : 2017. 12. 18(월) 15:00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 7. 제출서류

- 채용지원사업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 / 붙임 서식
- 사진 2매 : 지원서 제출전 6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를 응시원서에 붙임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각 1부
- 자기소개서 각 1부(A4용지 2매 분량 이내 - 붙임서식)
- 자격증, 수료증,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 경력증명서(근무지별) 각 1부

## 8.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 결정자가 합격등록 포기시는 차 순위 자로 합격결정
- 보 수 : 월 1,320천원 정도
  - 단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 마을과 협의 결정
- 기타 문의사항
  - 곶내미마을(010-3597-3000/010-3293-8077)로 문의해주시고, 채용에 관련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귀농담당(055-940-816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 주요내용				
⑥직무수행계획	월	담당업무	주요내용 / 계획	비고

이상과 같이 2018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일 :       년   월   일  
 신청 인 :                               (인)

※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 마을명을 기재
- ③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 ⑤ 담당업무(분야) /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 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 자 기 소 개 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내 용

2017. .

작성자 : ○ ○ ○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사무장 지원사업 협약(안)

이 협약서 안은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한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근무할 사무장을 채용함에 있어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를 “갑”이라 하고, 사무장 ○○를 “을”이라 하며, ○○시장·군수를 “병”이라 칭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기간) ① “갑”이 대표로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근무할 “을”의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로 한다.

② “갑”이 2단계 지원을 받는 경우, “갑”은 “을”을 ‘17년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규직(무기 근로계약 포함)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2조(근무장소) “을”이 근무할 장소는 로 한다.

제3조(근무시간) “을”의 근무는 월 일, 주 시간으로 하고, 휴일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제4조(업무수행) “을”은 “갑”과 “병”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도농교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비 지급) ① “병”은 “을”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활동비 명목으로 보조금(국고+지방비)을 월 만원을 일까지 직접 지급한다.

② “갑”은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활동비(마을 부담금)의 보조율에 따라 월 만원을 “을”에게 일까지 지급한다.

③ “병”은 “갑”이 “을”에게 협의회 부담금을 제때에 지급하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을 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시간외 수당으로 1시간에 천원  
을 지급한다.

- ② “갑”은 “을”에게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 ③ “갑”은 “을”에게 월 식대 만원을 지급한다.
- ④ “갑”은 “을”에게 보험료 만원을 지급한다.
- ⑤ 기타 수당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약의 해약 등)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병”  
과 협의하여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을”의 사무장 지원신청서가 허위나 거짓일 경우
- 2. “을”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기타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병”은 “갑”이 다음 각 호 해당할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갑”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갑”이 “을”에게 농촌체험·휴양마을 도농교류 업무 이외의 업무를 부  
당하게 강요하는 경우
- 3. 기타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보조금 회수) ① 제7조의 해약사유가 발생한 시점이후에는 “병”은  
“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단한다.

② 제7조의 해약사유가 발생한 시점이전으로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  
우에는 “병”은 “을”로 부터 회수하여야 하며, “을”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응한다.

제9조(근무실적 제출) “을”은 근무실적을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  
(RUCOS)에 주 1회 등록하여야 하며, “병”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① “갑”과 “을”간의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병”의 결정에 따른다.

② 근무 및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1조(특약사항) ① 사무장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장 운영요령과

본 협약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별도의 특약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갑”이 1단계 지원을 받는 경우, “병”은 “갑”과 “을”간의 정규직 채용 (무기 근로계약서 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 “을”, “병” 이 서명 또는 날인한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인 또는 서명

“을” : 인 또는 서명

“병” : 인 또는 서명

붙임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지원대상마을사업 선정(지원) 심사평가표(안)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li> <li>◦마을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li> <li>◦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자원 활용 정도</li> <li>◦지역의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li> <li>◦마을참여농가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관리 현황</li> </ul>	
2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li> <li>◦마을의 발전가능성(기대효과)</li> </ul>	
3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리더·주민 등의 농촌체험관광 관련 교육 이수현황</li> </ul>	
4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리더·주민 등의 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적극성 등)</li> <li>◦마을의 참여조직의 구성·운영여부 및 농촌관광참여가구 비율</li> <li>◦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li> </ul>	
5	마을 홍보 실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보유 및 내용의 충실성</li> <li>◦마을홍보책자 등 자체 홍보물 보유 및 수준</li> <li>◦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li> <li>◦1사1촌 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 노력</li> </ul>	
6	체험마을 운영성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 방문객수 및 증가율(전년대비)</li> <li>◦마을 재방문객수 및 재방문율(전년대비)</li> <li>◦마을 매출액 및 증가율(전년대비)</li> </ul>	
7	사무장 채용예산 지원 필요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장채용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li> </ul>	
8	가점(10), 감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 마을법인 운영, 등급 전부문 1등급마을, 평가 우수·시상 경력 등</li> <li>* 감점 : 마을평가 미흡, 민원발생, 조성 10년차 이상 등</li> </ul>	
종합평가(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의견 :</li> </ul>	

※ ‘대상마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6호 서식]

채용대상자 선정(지원) 심사평가표(안)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주요경력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경력내용(실적)</li> <li>◦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및 연계가능성</li> <li>◦담당(예정)업무에 대한 기여가능성</li> <li>◦담당(예정)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체험지도사 등) 및 교육이수현황(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등)</li> </ul>	
2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li> <li>◦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li> <li>◦마을발전에 대한 기여가능성(기대효과)</li> </ul>	
3	마을사무장으로서의 자질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li> <li>◦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li> <li>◦채용희망마을에 대한 사전지식, 이해정도</li> <li>◦헌신성, 성실성, 추진력 등</li> </ul>	
4	가점(10), 감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 유사경력 및 추가 관련 자격증 보유여부</li> <li>* 감점 : 타 마을사무장근무시 불량 평가시</li> </ul>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7호 서식]

## 근로계약서(예시)

사용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대표 ○○○(이하 ‘갑’이라 함)와 사무장 ○○○은(이하 ‘을’이라 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자는 본 계약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I. 계약 당사자

사용자(갑)		근로자(을)	
사업자명	○○ 농촌체험휴양마을	성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		근로시작일	

### II. 근로조건

#### 제1조 [취업 장소 및 직무]

●취업장소 : ○○농촌체험·휴양마을

●취업직무 :

●근무부서 :

●직 위 : 각 회사내 직위 명시\*

\* 시원 대리, 과장, 팀장 등 각 회사내 실제 직위 반드시 명시

#### 제2조 [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기한이 없는 무기 근로계약자로 본다.

② 연봉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종료 전 한 달 이내에 재연봉계약을 맺는다.

③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 연봉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연봉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동일 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 휴가]

①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적용하며,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로 한다. 단,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서별/개인별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근무토록 한다.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3:00 ~ 14:00

② 제1항에 의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갑’은 ‘을’과 합의하여 실시하되, 갑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시간 외 근로 요청시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기타 국가법정공휴일, 하기휴가 등은 정상근무일이지만 개인별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한다.

**제4조 [임금]** 임금은 총 연봉으로 지급하며 구체적인 내용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총연봉액 :                    원/년    ◆ 월급여 :                    원/월(①+②+③+④+⑤+⑥)

① 기본급 :                    원/월                    ② 연장근로수당 :                    원/월

③ 야간근로수당 :                    원/월                    ④ 휴일근로수당 :                    원/월

⑤ 상여금 :                    원/월                    ⑥ 휴가수당 :                    원/월

① 상기 월급에는 기본급 외 월평균 연장근로수당(52시간), 야간근로수당(10시간), 휴가수당 등이 포함되어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갑’은 매년 ‘을’의 임금 책정 시 ‘을’의 근무평가, 근태, 고객서비스 등 제한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봉을 결정토록 한다.

### **제5조 [임금지급]**

임금은 매 월 일 에 지급하되,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급여통장이체를 포함)으로 지급한다.

### **제6조 [손해배상]**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근로계약 중도해지를 포함)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갑’의 물품을 훼손 및 도난 시에는 민,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제7조 [계약해지]

- ①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 ② '을'의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③ '을'이 '갑'의 정당한 업무지시 또는 '갑'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손실을 끼쳤을 때.

### 제8조 [준수사항]

- ① '갑'과 '을'은 본 연봉계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 ②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 시 최소한 1개월 전에 회사에 사전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 되며, 회사의 승인 전까지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
- ③ '을'은 근무 시 또는 퇴직 후라도 '갑'과 관련되는 영업비밀,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수습]

- ①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사용 수습 기간으로 한다. 단, 경력직의 경우는 수습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사용기간 중도 또는 만료 시 적성이나 능력, 인간관계를 판단하여 본채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0조 [기타]

본 계약에 의한 기간과 임금 및 기타 금전의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갑'과 '을' 공히 본계약의 책임을 면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의거 위와 같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와의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 ○○○ (인)      [을] 사무장 ○○○ (인)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고 제2017-1273호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거창군수

## 1. 조례 일부 개정 이유

- “거합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이 2017. 12월말 완료 예정에 따라 「거창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필요
- 지난 1월 제정된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통해 약초분야 법인·단체의 시설 운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 향상과 자생력 확보코자 함

## 2. 주요내용

- 장 구분 신설: 총칙 등 4개장
- 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제13조 ~ 제16조

## 3. 개정조례안: 붙임

####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50147)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
- 전화 : 055-940-8293, 팩스 : 055-940-8179, 이메일: [hyungoing@korea.kr](mailto:hyungoing@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노화”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향노화산업”이란 향노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향노화를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제조·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향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3.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4.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한방약초 생산과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
6. 향노화 힐링특구 지원
7. 그 밖에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향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향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3. 향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4.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한방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6. 한방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7. 그 밖에 군수가 향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장 향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향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향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2. 향노화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활동
3. 지원계획 수립·변경
4. 향노화산업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향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향노화산업 담당과장, 향노화산업 관련 담당공무원
2. 향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향노화 관련 학과 대학교수 및 강사
4. 향노화 관련 기업체 대표 및 단체·법인 대표
5. 향노화 관련 경작 농업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향노화산업 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 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제13조(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운영) ① 약초, 향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에 둔다.

제14조(사업 및 기능) 약초센터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
2. 약초와 향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3. 향노화 제품개발

제15조(위탁운영)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약초생산자 단체·조합·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사업) 군수는 약초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매 시스템 및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사업
2. 약초 전처리 및 약초유통에 관한 사업
3. 약초센터 마케팅 사업
4. 기타 약초센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장 보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 -</p>
<p>제2조~제6조 생략</p>	<p>제2장 <u>향노화산업지원위원회</u></p>
<p>제7조(목적) (향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향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제7조(목적)(향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 - - - - - - - - - 향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li> <li>2. 향노화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활동</li> <li>3. 지원계획 수립·변경</li> <li>4. 향노화산업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li> <li>5. 그 밖에 향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 - - - - - - - - -</p>
<p>제8조~제12조 생략</p>	<p>제3장 <u>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u></p>
<p>&lt;신 설&gt;</p>	<p>제13조(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운영)</p>
	<p>① <u>약초, 향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1347 번지 일원에 둔다.</u></p>
	<p>제14조(사업 및 기능) <u>약초센터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u></li> <li>2. <u>약초와 향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u></li> </ol>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3. 향노화 제품개발  <u>제15조(위탁운영)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약초생산자 단체·조합·법인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u>  <u>제16조(지원사업) 군수는 약초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u>  1. 경매 시스템 및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사업  2. 약초 전처리 및 약초유통에 관한 사업  3. 약초센터 마케팅 사업  4. 기타 약초센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보칙</b></p> <p><u>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u></p>

# 2018년 주차단속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공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주차단속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1일

거창군수

1. 사업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일자리사업 참여자 운영과 관리
2. 사업주체: 거창군
3. 지정기간: 2018.1.1.~2018.12.31.까지
4. 총사업비: 금65,840천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기간	근로시간	월 지원액(천원,1인)		인원	
			인건비	운영비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12개월	1~11월	주 20시간	787	4명
			12월	주19시간	746	
복지일자리	참여형	주14시간이내(월56시간)		422	18	4명

※ 일반형 1.1.~12.31. 사업 참여자 퇴직금 지급

5. 수행기관의 역할
  - 가. 참여자 공개모집과 선발, 참여자 복무관리 담당
  - 나. 참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관리
  - 다. 매월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등 지급, 보수대장 비치·관리
  -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활동 추진
    - 단속 실적 보고: 월 2회 보고 / 매월 15, 30일 전후
    - 단속 차량 1개당 사진 3부 이상 첨부, 차량번호 기록 등 단속 대장 관리
  - 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 추진: 연 2회 이상
  - 바. 기타 장애인일자리 관련 업무 수행
6.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 신청·접수, 일자리 사업수행이 용이한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7. 신청서 접수

- 가. 신청기간: 2017.12.01. ~ 12.11. / 11일간
- 나.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1부[서식1]
  - 장애인일자리사업 계획와 예산서 1부[서식2]
  - 기관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1부
- 다. 접수 처: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 라. 신청방법: 직접방문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 8. 사업자 선정·통보

- 가. 선정방법
  -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기관 결정
  - 동점시설 발생 시에 사업계획, 신청기관 역량, 예산편성 등의 점수순서에 따라 결정
- 나. 선정결과통보: 해당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 9. 기타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사업은 선정된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재위탁이 불가합니다.
- 다. 작성 서식에 맞게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되 예산집행계획은 2018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안내를 준수하여 작성합니다.
- 라. 공모기관이 2개 기관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 심사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복지정책과/☎055-940-30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위탁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서식 1부. 끝.

2017년 12월 1일

**거창군수**

##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 2. 제정이유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설치 목적과 회관의 위치, 용어를 정함: 조례 안 제1조~제3조

나. 주요시설과 사업을 정함: 조례 안 제4조, 제5조

다. 사용허가와 운영·관리 사항을 정함: 조례 안 제6조~제8조

라. 이용의 제한, 이용료, 이용료 면제 등을 정함: 조례 안 제9조~제11조

#### 4. 제정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17. 12. 1. ~ 2017. 12. 21. / 20일간

#### 6.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55-940-3093
- 팩 스: 055-940-308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940-3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제  
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관의 위치)** 회관은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092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하고, “노인”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노인단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노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주요시설)** ① 장애인복합문화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2. 장애인단체 운영 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 다목적 강당,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② 노인복지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노인회 사무실, 프로그램실
2. 강당, 회의실, 노인건강증진실
3. 주방, 급식실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주요사업)** ① 장애인복합문화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센터 운영
  2.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단체에 위탁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인대학,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단체)** “회관”은 제5조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와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노인 단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과 관리)** 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노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노동집회, 상 행위 등
4.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이용료)** 군수는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0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노인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강당	1회/4시간	50,000원	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10,000원 가산 (음향, 조명등 시설 사용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5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허가조건

③ 군수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

## 2018년 거창군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거창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1년간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행정사무 업무 보조
- 근무지: 거창군 소재 읍·면 사무소, 산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 보수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1월~11월 1,574,000원, 12월 1,476,000원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1월~11월 787,000원, 12월 746,00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모집인원과 기간

- 모집인원: 21명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19명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2명
- ※ 모집인원은 예산과 배치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모집기간: 2017.12.1. ~ 12.14. / 14일간

### 3. 신청자격과 선발방법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사업수행이 가능한 등록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4. 신청 시 제출서류와 접수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① (공통) 자필로 서명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 ② (공통) 자필로 서명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자필로 서명한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는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는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 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접수방법: 직접 또는 우편 /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 5.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일자리 참여자의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거창군 홈페이지 또는 신청하시는 읍면사무소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
-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TEL. 940-3095) 또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일  
거창군수

## 2018년 거창군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거창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1년간)
- 근무시간: 주 14시간, 월 56시간 / 배치기관과 참여자 간에 조율하여 1일 시간 배정
- 근무내용: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 업무보조, 청소도우미 등
- 근무지: 거창군 소재 읍·면 사무소, 산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 ※ 주요배치기관: 읍면사무소,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 보수: 월 422천원 / 산재, 고용보험 필수 가입
  -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모집인원과 기간

- 모집인원: 56명
  - ※ 모집인원은 예산과 배치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모집기간: 2017.12.1. ~ 12.14. / 14일간

### 3. 신청자격과 선발방법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사업수행이 가능한 등록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4. 신청 시 제출서류와 접수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① (공통) 자필로 서명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 ② (공통) 자필로 서명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자필로 서명한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는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는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 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접수방법: 직접 또는 우편 /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 5.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일자리 참여자의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거창군 홈페이지 또는 신청하시는 읍면사무소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
-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TEL. 940-3095) 또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일  
거창군수

거창군 공고 제2017-1281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한 『154kV 함양-거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04

경상남도 거창군



1. 사업명 : 154kV 함양-거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당해 사업은 송전선로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의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며, 상세한 보상내용은 추후 보상사업 시행시 한국전력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3. 공고기간 : 2017. 12. 04 ~ 2017. 12. 29

4. 의견제출기간 : 2017. 12. 04 ~ 2017. 12. 28

5. 실시계획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거창군 경제교통과

6. 문의처

○ 한전 경남지역본부 송전운영부(☎ 055-717-2676, 2677, 2524)

○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712)

## 분묘개장 공고(2차)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 편입부지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수량	개장사유	비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20번지	2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 편입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2번지	5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4-17번지	2기		

2. 개장사유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3단계 조성사업 편입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거창군이 지정하는 장소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2017. 12. 04 ~ 2018. 01. 22(50일간)

6. 신고 및 연락처 : 경상남도 거창군 환경과(055-940-3502)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위 분묘에 대하여 연고자나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 분묘개장 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같음합니다.

2017년 12월 05일

# 거창군수

##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2017년 12월 5일(화) 10:00
2. 집회장소: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2017년 12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김 종 두